

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이유서

의안번호	18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5. 17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, 자활여건의 조성과 향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○ 장학금의 명칭(안 제2조)

• 장학금의 명칭은 “부산직할시 사하구 복지 장학금”이라 함.

○ 장학금의 지급대상(안 제3조)

• 생활보호대상자, 영세 농어민,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

단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

○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(제4조)

•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－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

－일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

○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(안 제5조)

•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함.

○ 장학생의 선발(안 제6조)

• 동장이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

○ 지급정지(안 제7조)

-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 불량, 퇴학, 정학, 휴학처분, 타 시도로 전학, 목적의 사용, 거주지를 사하구 관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

- 지급정지 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.

- 장학생의 조성 및 관리(안 제8조)

-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.

-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.

- 장학금의 재원(안 제9조)

-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

3.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3조